

## 외국인유학생입학전형관리위원회규정

2021.07.01. 제정 2023.09.01. 일부개정

<국제교류팀>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동명대학교(이하 “본 대학교”라 한다)의 외국인유학생 입학전형의 전반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외국인유학생 입학전형관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기능,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구성)**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제교류처장이 되고,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하는 3인 이상의 교원과 국제교류팀장으로 구성한다. (개정 2023.9.1.)

**제3조(기능)**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외국인유학생 입학전형 계획 심의
2. 외국인유학생 입학전형 관리업무의 주요사항 심의(전형유형, 전형자료, 자격기준, 사정방법, 전형일정, 모집인원의 배분 등)
3. 외국인유학생 입학전형 운영에 대한 이의신청 심의

**제4조(회의)**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과반수 위원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**제5조(회의록)**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중요한 결의사항은 총장에게 보고한다.

**제6조(간사)**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 및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, 간사는 위원장이 임명한다.

**제7조(기타사항)**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기타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하여 시행한다.

### 부 칙

이 규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

이 규정은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